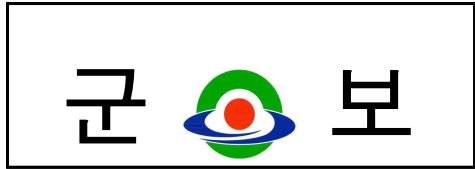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33호 2024. 5.27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려

-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618호)
-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619호)
-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예천군 조례 제2620호)

고 시
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69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618호

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

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
2.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
3. 주민의견 수렴·확산 등 예천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과의 교류 확대
4.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
5.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

제4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예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지능정보화의 추진)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보건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환경, 교통, 물류, 과학기술, 재난안전, 치안, 국방, 에너지 등 소관 업무

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 · 생활 ·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,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 ·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)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천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

를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제9조(지능정보화 교육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·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)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
2.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
3.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
4.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, 워크숍,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
5.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

제11조(정보격차의 해소) 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
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건전한 정보문
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
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
수 있다.

제13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
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
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정보보호)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
2.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활용,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
관리
3.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
4.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
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
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[現]법령에 맞게 현실화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◇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」 → 「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」

나.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삭제

다. 「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」을 「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」으로 변경 수립(안 제4조)

라.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업무 규정(안 제5조)

-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

마.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능정보화사업 지원 사항 규정(안 제9조 ~ 제13조)

-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,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,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지원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619호

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(2024. 1. 1. 시행)으로 종전 증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-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상향(안 제4조)
 - 1매당 세액 : 30만원 미만 ⇨ 45만원 미만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620호

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충전시설”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

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활성화계획 수립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5조(재정 지원)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

3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예천군 주차장 조례」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
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충전시설 보급 확대)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·확대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으며,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)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·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

리 조례」 또는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홍보 및 교육)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제정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 수립

나. 재정, 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,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,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에 재정 지원
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운행 지원

다.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-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
-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 위탁 가능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 합니다.

2024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1. 목 적

급경사지 사면이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등에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지정범위

지구명	위 치	등급 및 규모			지정 사유
		유형	등급	현황	
송월1지구	은풍면 송월리 산66-4	붕괴 위험 지역	D (71점)	H= 15m L= 94m S= 45°	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표층붕괴가 관찰되고,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대책공법 적용을 통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함
용두1지구	효자면 용두리 산45-1	붕괴 위험 지역	D (64점)	H= 83m L=105m S= 48°	
용두3지구	효자면 용두리 산1-7	붕괴 위험 지역	D (69점)	H= 15m L=130m S= 50°	
도촌1지구	효자면 도촌리 산15	붕괴 위험 지역	D (61점)	H= 9m L= 65m S= 50°	
명봉N1지구	효자면 명봉리 408-1	붕괴 위험 지역	D (61점)	H= 8m L= 52m S= 55°	

3.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

가. 위험지구에 대한 표지판 설치

나. 추후 예산확보 후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

4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○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

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 및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
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
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
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야 함.

5.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: 2024. 5. 27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(☎054-650-69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

□위치도

위치도

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 산66-4번지 일원(송월1지구)



□위치도

위치도

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산45-1번지 일원(용두1지구)



□위치도

위치도

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산1-7번지 일원(용두3지구)



□위치도



□위치도

위치도

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408-1번지 일원(명봉N1지구)

